

회 의 록

회의명: 2015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장소: 대학본부 3층 중회의실

작성자: 백창원

일시: 2015년 4월 14일(화요일) 11시

1. 위원 출결 사항: 재적위원 10인 중 8인 참석으로 성원

- 참석 위원: 장태현 위원장, 한성호 위원, 조준호 위원, 장재홍 위원, 손성익 위원, 구태완 위원, 이원종 위원, 김태완 위원
- 불참 위원: 이태화 위원, 강사웅 위원

2. 안건

- 제 1호 안건: 2014학년도 회계 결산안
- 제 2호 안건: 2015학년도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안

3. 개회 선언: 위원장은 우리 대학 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소집된 2015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 다음과 같이 의사를 진행하였음.

4. 회의 내용

제1호 안건 : 2014학년도 회계 결산안

- 김정락 재무회계팀장으로부터 2014학년도 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음.

[주요 의견]

- 학교 재정구조상 등록금 수입만으로 현재 지출하고 있는 학생경비의 규모를 충당할 수 없을텐데,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자금전출이 가능한가라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에 의거하여 이는 제한되어 있으며 전체 학생경비 중 일부만 등록금회계 지출로 편성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장학금 지출에 대한 자원별 구분(교비, 연구비, 국고 등)은 어떻게 산출하였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회계처리 계정을 통해 각 자원별 구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학생경비 산출시 등록금회계의 학생경비만 계상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합산 재무제표(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로 결산하기 때문에 비등록금회계의 학생경비 지출도 산입됨을 설명하였음

- 운영계산서, 대차대조표, 자금계산서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재무회계팀장의 간략한 설명이 있었음

[심의 결과]

- 2014학년도 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2014학년도 회계 결산안			
1. 운영계산서			(단위:억원)
과 목	2014년	2013년	증 감
수 익	2,724	2,947	△223
비 용	2,940	3,046	△106
운영차액	△216	△99	△117
2. 대차대조표			(단위:억원)
과 목	2014년	2013년	증 감
자 산	5,952	5,801	151
부 채	828	802	26
기 본 금	5,124	4,999	125
3. 자금계산서			(단위:억원)
과 목	예산액	결산액	잔 액
자금수입	3,227	3,182	△45
자금지출	3,447	3,209	△238
수지과부족	△220	△27	193
차기이월자금	718	959	241

제2호 안건 : 2015학년도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안

○ 손성의 위원으로부터, 2015학년도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음.

[주요 의견]

○ 작년에 이미 심의했던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을 이렇게 매년 심의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등록금심의위원들이 교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음

○ 2014학년도는 등록금회계가 운영된 첫 해였던 만큼 편성된 항목의 적절성 및 각 항목별 집행관리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는 편성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정교한 예산운영 및 집행을 관리하겠다는 부연설명이 있었음

[심의 결과]

- 2015학년도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2015학년도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안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이월의 경우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이월의 경우 장학금 및 학생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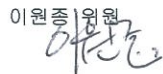
5. 폐회 선언: 이상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함. 끝.

담당자

위원장

참석자

구태완 위원


이원중 위원


김태완 위원

[심의 결과]

- 2015학년도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2015학년도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안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이월의 경우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이월의 경우 장학금 및 학생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5. 폐회 선언: 이상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함. 끝.

담당자

위원장

참석자

구태완 위원

이원중 위원

김태완 위원

